

국어 기본법과 국어 생활 향상을 위한 제도

권재일

국립국어연구원 어문규범연구부장

1. 머리말

언어는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기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그 민족 문화를 창조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우리말 역시 반만 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민족 문화를 창조해 온 힘이 되었다. 우리가 우리말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높이 받아들여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보면, 우리말의 가치에 너무 무관심하여 국어가 망가뜨려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 세계화 추세에 따라 일상 생활과 교육 현장에서 국어가 경시되고 영어가 더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국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국어를 지켜 보전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국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 방안이 될 것이다.

국어에 대한 법령은 현재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문화 예술

진흥법', '문화 예술 진흥법 시행령', '사무 관리 규정' 등에 흩어져 있고, 주로 문자 사용에 국한된 내용을 담고 있어, 국어를 발전시키고 진흥시키는데 필요한 적극적인 법령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만으로는 국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진흥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서, 새로이 국어 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번에 국가에서 제정하려 하는 국어 기본법의 초안(이 글에서 줄여서, '이 법초안') 제1조에 바로 이러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¹⁾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의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의 바탕을 마련하여,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초안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민의 책무로서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의무,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지식 정보 전달의 효율화, 민족 언어의 통일, 미래 세대에 국어의 보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법초안이 담고 있는, 국어 생활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내용을 필요성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지난 몇 달간 국어기본법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입법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견해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려고 한다.

이제 차례대로 제2장에서는 국어정책 수행을 위한 제도, 제3장에서는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제도, 제4장에서는 국어 진흥과 보급을 위한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이 글에서 인용하는 법조문은 문화관광부가 2003년 4월 2일에 발표하고 그간 의견을 수렴하여 6월 14일에 최종적으로 다듬은 '국어 기본법'(초안)에 따른다.

2. 국어정책 수행을 위한 제도

국어의 발전과 진흥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 법초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제도로는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 국어 문화 지수 산정, 국어 책임관 임명 등이 있다. 이들을 차례로 살펴보자.

2.1.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이 법초안에서는 국가가 국어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 연차 보고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국가가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함을 규정한 법초안 제8조는 다음과 같다.

제8조(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①문화관광부 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 계획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수립하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어문 규범의 제정과 개정, 3.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환경 개선, 4. 국어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 방안, 5. 국어의 선양과 국어 문화유산의 보존, 6. 국어의 국외 보급, 7. 국어의 정보화, 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 9. 그밖에 국어의 사용, 보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그간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는 분야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나, 국어와 관련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국어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 중장기 기본 계획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래서 5년마다 국어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수립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장차 국어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가 매년 국어 발전과 진흥에 관한 시책과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국회 연차 보고 의무라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것 역시 국어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국어정책 기관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연차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국어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차 보고에는 국어정책의 기본 계획, 국어 사용의 저해 환경 실태, 국어 보전과 보급의 추진 상황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어 사용의 저해 환경 실태를 보고하게 되면, 어문 규범, 국어 교육, 국어 오용, 외래어 남용, 비속어 사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를 반영하여 국어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 보전과 보급의 추진 상황을 보고하게 되면, 국어 보전, 보급에 대한 구체적 시책, 국어 학술 연구 단체에 대한 지원, 민간 국어 운동 단체에 대한 지원, 재외 동포와 국내외 외국인을 위한 국어 교육 보급 지원 등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밝혀 장기적인 국어 보전과 보급 정책의 기반 자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2.2. 국어 문화 지수 산정

이 법초안에서는 국가가 주기적으로 국어 실태를 조사하여, 국어 문화 지수를 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를 규정한 법초안 제11조는 다음과 같다.

제11조(실태 조사) ①문화관광부 장관은 국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 의식, 국어 능력, 국어 환경 등에 관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정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국민의 국어 문화 지수를 산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국어 생활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최근의 가장 큰 변화는 국어 사용 환경의 변화이다.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어 사용 실태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의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컴퓨터가 일상 생활화되면서 종이에 쓰던 것을 컴퓨터에 직접 쓰고, 종이 책을 읽던 것을 화면상에서 읽거나 보게 되어 국어 사용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화 추진과 외국어 교육 강화로 국어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래의 국어정책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어 전반에 관한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고 국어 문화 지수를 정기적으로 발표하여 국민에게 국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정책적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어 문화 지수 산정을 위한 효율적이고 정확한 조사 방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²⁾

2.3. 국어 책임관 임명

이 법초안에서는 국가가 각급 기관에 국어 책임관을 임명하여 국어 생활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를 규정한 법초안 제13조는 다음과 같다.

제13조(국어 책임관의 임명 등) 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어 발전 시행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지원과 국어 환

2) 이에 대한 앞선 연구로는 민현식(2001), 「연구보고서: 국어 사용 실태 지수 개발 및 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가 있다. 그리고 2003년도 문화관광부 국어정책과의 공모과제로 국어 문화 지수 산정과 관련한 과제가 연구 중에 있다.

경의 개선 등 국어 진흥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 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어 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국어 발전 시행 계획의 종합 및 조정과 추진 실적의 평가, 2. 국어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국어정책의 수행자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국어 책임관을 두도록 명시한 제도이다. 이 법초안에서 설정한 국어 책임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어 발전 시행 계획의 종합 조정과 추진이다. 국가가 세운 국어 발전 종합 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는 국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과 시행이다. 해당 기관의 국어 사용 환경이나 해당 기관 구성원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점검하여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셋째는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이다. 해당 기관 직원의 업무상 필요한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다.³⁾

3.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제도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서 공공 기관⁴⁾과 국민들이 지녀야 할 기본 책무

3) 정부 기관에 있는, 국어 책임관과 비슷한 예는 다음과 같다.

- ‘여성 발전 기본법’ 제12조(여성 정책 책임관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여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 정책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9조의2(정보화 책임관의 임명 등)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 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4) 이 법초안에서 ‘공공 기관’이란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도 대통령령이 정하

가 있다. 이를 국어 기본법에서 제도화한 것이 어문 규범 제정, 공용 문서의 한글 전용, 그리고 국어 사용에 관한 일반적 책무 등이다. 이들을 차례로 살펴보자.

3.1. 어문 규범 제정

언어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조건에 따른 가변성을 지니지만, 언어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도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언어 사용자가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변성을 지닌 언어 체계를 동일한 언어 체계로 삼기 위해서는 규범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이 편리하게 언어 생활을 하도록 국가는 동일 체계로서 어문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어문 규범은 크게 언어에 대한 규범과 문자에 대한 규범으로 나뉜다. 언어에 대한 규범은 ‘표준어 규정’인데, 이에는 표준 어휘뿐만 아니라 표준 발음도 포함된다. 문자에 대한 규범은 ‘한글 맞춤법’이다. 그리고 외래어를 표기하는 규범은 ‘외래어 표기법’이며,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규범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다.⁵⁾ 이러한 규범 외에 다양한 언어 사용법을 규정한 ‘표준 화법’도 어문 규범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법초안 제16조는 국가가 어문 규범을 제정, 개정, 고시하는 책무를 규정하였다.⁶⁾

제16조(어문 규범의 제정) ①문화관광부 장관은 어문 규범을 국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문 규범의 제정·개정,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는 공공 단체를 말한다.

- 5) 이들 규범의 제정, 고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글 맞춤법(1988년: 문교부 고시 제 88-1호), 표준어 규정(1988년: 문교부 고시 제88-2호), 외래어 표기법(1986년: 문교부 고시 제85-11호, 1992년: 문화부 고시 제1992-31호, 1995년: 문화체육부 고시 제 1995-8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2000년: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
- 6) 현행 제도인 ‘문화 예술 진흥법’ 제7조에 따르면, 어문 규범의 제정, 개정은 국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이 법초안에는 국민의 모든 언어 생활은 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어려운 한자어, 잘못 표기된 외래어, 분별 없이 쓰는 외국어를 바르고 품위 있고 쉬운 국어로 순화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부정확한 국어 사용으로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3.2. 공용 문서의 한글 전용

공용 문서, 법규 문서, 그리고 공공 기관의 서류 작성과 관련한 이 법초안의 조항은 제17조이다.

제17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공공 기관의 공문서와 그 밖의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되 어문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시기까지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③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주관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법령안의 어문 규범 준수와 표현 순화에 대하여 문화관광부 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공용 문서의 작성과 관련한 현행 법률은 1948년 10월 9일에 공포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제정 이후 여러 사정에 의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공문서 작성에서 한글 표기를 더욱 철저히 지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글 전용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제68호(1968년)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공용 문서의 한글 전용 정책은 그간 관심과 실천 의지의 부족으로 잘 지켜지지 못했다. 그 이후 규정을 개선하여 ‘사무 관리 규정’

(1999년)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⁷⁾

제10조(문서 작성의 일반 사항) ①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
되, 올바른 뜻의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기
타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쓴다.

공용 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과 국어 기본법 초
안의 기본 취지는 같다. 즉, 한글로 작성한다는 큰 원칙이 같다. 다만 다음
과 같이 세부 사항에서는 차이가 있다.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얼
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 하여 얼마동안은 괄호 없
이 ‘光州는 文化와 藝術의 都市이다’로 적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어 기본법 초안 제15조 제2항에서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문자를 넣어 쓸 수 있다’라 하여 ‘광
주(光州)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이다’처럼, 광주(光州, 廣州)를 괄호 안에
적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문자 생활이 한글 전용으로 완전히 정착되었다는 현
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며, 다만 의미 혼동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그것도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시기까지) 괄호 안에, 다른 문자를 병
기하도록 한 것이다. 그간 많은 사람들이 국어 기본법과 관련하여 공용 문서

7) ‘사무 관리 규정’ 제10조의 내용이 반영된 각종 법령은 다음과 같다.

- 국회 사무 관리 규정 제8조(문서 작성의 일반 사항)
- 법원 사무 관리 규칙 제10조(문서 작성의 일반 사항)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관리 규칙 제10조(문서 작성의 일반 사항)
- 헌법재판소 공문서 규칙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 사항)
- 정부투자기관 문서 규정 제9조(문서의 용어)
- 도로 표지 규칙 제5조(글자와 기호의 규격 및 표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표기)
- 호적법 제49조(출생 신고의 기재 사항)
- 호적법 시행규칙 제29조(신고서의 문자) 및 제70조(호적 기재의 문자)

작성의 한글 전용과 한자 혼용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결론적으로 이 법초안은 공용 문서의 한글 전용 원칙을 분명하게 재천명한 것이다.⁸⁾

법규 문서는 그 해석에 있어서 중요성을 감안하여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주관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어문 규범 준수와 표현 순화에 대하여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⁹⁾

그런데 법규 문서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법률 한글화 추진 기본 계획에 따라 최근 ‘현행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올 한글날 이전에 제정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새로 제정하는 법률은 물론, 기존 법률의 한글 전용 방침을 천명한 획기적인 조치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3.3. 국어 사용에 관한 일반적 책무

이 법초안 제6조는 국어 사용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제도화한 것이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국어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국어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불편 없이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 ‘공용 문서를 어문 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넣어 쓸 수 있다’라는 규정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즉, 한글 전용을 주장해 온 단체들은 제15조 제2항 규정의 폐지를 주장할 것이며, 국한문혼용을 주장해 온 단체들은 제15조 제1항 규정 자체를 반대할 것이다. 입법소위원회는 두 단체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절충한 것이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9)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주관 기관 및 법제 심의 기관에서는 제15조 제4항의 규정을 번거롭고 불필요한 절차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두 가지로 나누어 명시하였다. 첫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곧 정책 수립과 집행의 의무를 밝힌 것이다. 건전한 국어 사용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킬 의무를 제도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길거리 광고물 관리를 어문 규범에 맞게 지도하여 정보 전달 효과 면에서 올바른 광고 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언어 장애인들의 언어 생활의 편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할 책무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언어 장애인들이 언어 생활의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보장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국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생활 안정, 의료 지원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언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매우 미흡하였다. 맹인을 위한 한국점자통일안을 제정한 바 있는데, 이러한 배려가 시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 장애인, 정신 장애인, 중증 언어 장애인 등 다양한 언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법초안 제19조는 개인, 기업, 언론 기관 등이 어문 규범을 준수할 책무를 규정한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9조(시정 요구) ① 문화관광부 장관은 공공 기관, 언론 기관, 기업, 개인 등에 대하여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어문 규범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며, 이에 어긋나는 사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정 요구를 받은 공공 기관, 언론 기관, 기업, 개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시정 요구 사실과 그 이행 여부를 공표할 수 있다.

어문 규범은 국민의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므로 국

민은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국가는 국민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규정을 통해, 국민들이 어문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잘못이 있을 경우 정부는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¹⁰⁾

첫째, 국민의 언어 생활의 방향을 이끌면서 영향력이 큰 방송, 신문, 도서, 인터넷 등의 대중 매체에서는 어문 규범을 준수하여 국민의 올바른 언어 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하고, 방송, 신문, 도서, 인터넷의 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둘째, 광고는 어문 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방송 광고는 국민의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해치는 비속어, 은어, 조어, 외국어어투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광고는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특히 방송 광고는 그 화면에 상품명, 기업명, 기업 표어를 외국어로 표현할 때에는 한글을 병기하여야 한다.

셋째, 상표, 상품명, 상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써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도 한글을 병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법초안에 대해 서로 다른 두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이러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한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는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한 실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10)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현행 법령은 다음과 같다.

- 문화 예술 진흥법 제8조(어문 규범의 준수)
- 상표법 제9조의 2(출원일의 인정 등)
-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 방법)
-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2조(방송 언어), 제53조(사투리 등)
-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언어), 제23조(음악)

4. 국어 진흥과 보급을 위한 제도

국어 진흥과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을 수 있다. 국제국어진흥원 설립, 국어진흥기금 설치, 국어능력 검정시험 시행, 국어 상담소와 국어 상담사 제도 도입 등이 이에 속한다. 이제 이들을 차례로 살펴보자.

4.1. 국제국어진흥원 설립

이 법초안에서 설립하려는 국제국어진흥원은 재외 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의 국외 보급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관련 규정은 법초안 제25조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5조(국제국어진흥원의 설립) ①문화관광부 장관은 국어의 국외 보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국어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어의 국외 보급을 위한 교재 개발·보급과 교사 양성·파견, 2. 국어의 국외 보급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와 국제 협력, 3. 그밖에 국어의 국외 보급에 필요한 사항. ④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진흥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어의 국외 보급을 위해서는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또 효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현재 이를 위한 전담 기관이 없다. 현재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있지만, 인적, 재정적 한계로 그 기능을 담당하기는 벅차다. 그밖에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국제교육진흥원과 한국 학술진흥재단, 외교통상부 산하에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이 설

립되어 있지만 이 재단들은 국어의 국외 보급과 일부 관련은 있어도 국어의 국외 보급을 전담하는 기구는 아니다. 이들 각 재단은 상호 독립된 업무(국제 교류, 국어 교수 파견 및 지원, 재외 동포 초청 등)를 추진하고 있지만, 소규모의 산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어 보급 업무를 담당할 전담 기관 설립이 시급하다. 민간이 주도하되 기존의 국어정책 기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특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국제국어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이다. 국제국어진흥원의 기본 사업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1) 기획 사업: 국어의 국외 보급 관련 연구 및 사업 개발 기획. (2) 연구 사업: 국어의 국외 보급 실태 조사, 학습자 요구 사항 및 해결 방안 연구. (3) 교육 사업: 국어 교사 인증 시험 운영, 인증 교사 교육. (4) 연수 사업: 국내외 국어 예비 교사 교육 및 교사 재교육. (5) 보급 사업: 국어의 국외 보급 결과물 및 교재 보급, 책 발간. (6) 지원 사업: 대외 협력 사업, 국제 학술대회 개최, 국어 교수 파견, 초청.

다만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기보다는 기존의 국립국어연구원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책 판단이 요구된다.

4.2. 국어진흥기금의 설치

국어 진흥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어진흥기금의 설치가 요구된다. 기금이 마련되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어의 보급과 관련된 활동. (2) 국어의 국외 보급을 위한 교육 시설 운영. (3) 국어의 국외 보급을 위한 교사의 양성. (4) 국어와 관련한 학술 교류.

국어 진흥은 국내외의 국어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어떻게 지원하고 활성화하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투자 규모의 확대와 효율적인 지원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에 필요한 재원으로 기금 신설이 요구된다. 재원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일정 금액

을 출연하고 민간이 이에 참여하여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4.3. 국어능력 검정시험 시행

국어의 중요성에 비해 일반 국민들의 자각과 인식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국어의 잘못된 사용은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그것은 국민간의 문화 정보 전달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국민들의 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대하는 정책을 편다면, 국민들의 국어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이것은 취업이나 승진에서 영어나 한자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대하는 것과 같은 취지라 하겠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 국민들의 종합적인 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올바른 국어 생활의 향상과 창조적인 국어 문화 창조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민간 기관에서 국어능력 검정시험과 비슷한 시험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실효가 적은 편이다. 한편 새로운 시험 제도는 국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그 유용성에 대한 정확한 정책 판단을 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4.4. 국어 상담소와 국어 상담사 제도 도입

국어 상담소는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 생활에서 부딪치는 언어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기관이라 하겠다. 이 법초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급 학교와 직장이 소속 학생과 직원의 국어 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어 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국민들은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언어 생활을 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어휘와 국어의 문장 구조에 맞지 않는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에 장애를 주고 있다.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에서 사용하는 문서에

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그래서 이를 그냥 두면 국어의 오용을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공공 기관이나 국민들의 언어 생활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풀어줄 장치가 필요한데, 그 실천을 위한 제도가 바로 국어상담소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어 상담소를 운영할 인적 자원으로 국어 상담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장사가 그 한 예라 하겠다. 이러한 국어 상담사 제도를 국어 기본법 제정과 동시에 법제화하는 문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정책 과제라고 생각한다.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올해 정부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어 기본법이 담고 있는, 국어 생활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내용을 그 필요성과 함께 살펴보았다. 국어정책 수행을 위한 제도,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제도, 국어 진흥과 보급을 위한 제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만들어 국어의 발전, 진흥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어의 참된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국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 가지려는 태도의 확립이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프랑스 처럼 자국어어를 지키기 위하여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법적 규제를 두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국민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 기관에서 더 필요한 것이며, 더더욱 이들이 앞장서야 할 일이다. 최근 법제처에서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은 국어 발전과 진흥을 위해 대단히 긍정적인 태도일 것이며, 'Hi Seoul 페스티벌, Open Your Seoul'이라 표기한 포스터를 서울 온거리, 지하철 구석구석 도배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청의 의식은 국어 발전과 진흥을 위해 대단히 부정적인 태도라 하겠다. 우리말 우리글을 위해 진정 국민, 국가가 나아갈 방향은 어느 쪽일까?